

고소작업대 승강작업 중 추락

상가건물 간판 교체 · 설치작업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에 부착된 고소작업대(높이 10m)에 탑승한 상태에서 붐대를 펼치던 중 과도하게 펼쳐진 붐대로 인해 차량전복위험이 발생하자 차량운전자가 갑자기 붐대를 접으면서 작업대가 심하게 흔들려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이동식크레인 붐대 길이에 따른 인양하중 초과 작업
 - 고소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를 초과하여 붐대를 내밀었음
 - 최초작업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나 크레인을 이동설치하지 않고 붐대만 내밀어 무리한 작업 실시
- 안전대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-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미흡

TIP

안전작업

1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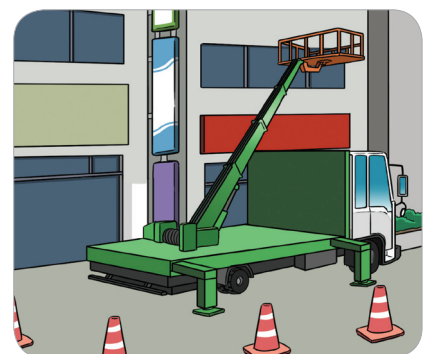
- 고소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로 안전작업 실시 (이동식크레인을 안전작업반경내로 이동 설치)

2 안전대,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

-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대,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

3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

-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높이를 4면 전체를 90~120cm로 하고 난간 기둥의 간격을 좁게 하거나 막을 것



안전작업반경 내 설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(방호장치의 조정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 (경사각의 제한)





고소작업대 승강작업 중 추락

크레인 붐대 길이와 무게에 따른 안전작업을 실시하세요!

